

정보통신기반보호법(안)

(요약 본)

제정 배경

- 해킹·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21세기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대두
- 미국은 1998. 5월 대통령훈령(PDD63)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
 - 2003년까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능력을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2000. 1월 「국가정보시스템보호대책」을 수립
- 일본은 1999. 9월 「정보보안관계성청국장회의」를 설치하고 2000. 1월 「해커대책등의 기반정비에 관한 행동계획」을 수립·추진
-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금융, 통신, 운송, 에너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「정보통신기반보호법」 제정을 추진

추진경과

- 지난 2월 「사이버테러 방지 관계장관회의」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[정보통신기반보호법(가칭)]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
- 2000. 5월 정보통신부에서 관계부처, 학계, 연구계,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법률제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[정보통신기반보호법(시안)]을 마련하고, 2000년 7월 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

법안의 주요골자

□ 적용범위

- 국가·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·통신·항공 등 주요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법안에 규정(법안 제2조)

□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

-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「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」를 설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호정책의 수립·시행을 총괄·조정하고, 범국가적 차원의 「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계획」을 수립·추진(법안 제4조 및 제5조)

□ **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**

- 「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」에서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·통신·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대상으로 지정 (법안 제6조 및 제12조)
-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정보통신기반보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소관 분야에 대한 보호지침을 제정·권고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·권고함 (법안 제8조, 제14조 및 제15조)
-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관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·평가하여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 (법안 제9조 및 제13조)
-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운영·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·평가와 보호대책 수립시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하고,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이전, 장비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(법안 제11조, 제20조 및 제33조)
-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운영·관리기관은 소관 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(법안 제17조 내지 제21조)

□ 「정보공유·분석센터」 설립 추진

-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대응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·통신 등 분야별로 전자적 침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경보 및 대응정보 등을 제공하는「정보공유·분석센터」설립을 지원 (법안 제22조 및 제23조)

□ **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**

-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와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,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적은 시설운영기관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기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(법안 제24조 내지 제30조)

□ **기술지원 및 민간협력**

-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, 핵심기술 개발, 국제협력을 추진 (법안 제31조 내지 제34조)

□ **주요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 처벌**

- 해킹,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, 마비, 파괴한 자는 형법 등 일반법에 비해 가중 처벌 (법안 제16조 및 제37조)

향후 추진일정

- 2000년 8월 :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
- 2000년 9월 : 법제처 심사
- 2000년 10월 : 입법안 국회 제출
- 2001년 7월 :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

